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일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29.

발의자 : 윤일규 · 안호영 · 조승래
이동섭 · 이용득 · 박홍근
윤호중 · 기동민 · 맹성규
신동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,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·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음.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, 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대상 질환에서 빠져있음. 이에 현행법상 “심뇌혈관질환”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바. 이상지질혈증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심뇌혈관질환”이란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마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바.</u>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<u>바.</u> 이상지질혈증 <u>사.</u> (생 략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